

2000. 12. 23(土)

제66회제2차정례회제7차본회의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總 務 社 會 委 員 會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12. 16 제 천 시 장
- 나. 회 부 일 자 : 2000. 12. 16
- 다. 상 정 일 자 : 2000. 12. 19(제66회제2차정례회총무사회위제4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지선대)

가. 제안이유

- 2001. 1. 1부터 시행 하게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의 내용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의 내용을 받아들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개정
 - 제3조(세목) 제2항제5호 “농지세” 가 “농업소득세” 로 개정됨에 따라 제18조(납세의무자) 제2항, 제4절(농업소득세) 제41조(납세의무자)1항부터 제4항,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 제43조(개간, 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등의 관련 규정의 개정
 - 제55조(세율) 제1항제1호 가목의 제1종 췌련 20개비당 “460원” 을 510원으로 개정
 - 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 제1항의 도축세의 과세 시가에

대하여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 하는 것을 “시가는 시장이 미리 결정” 으로 개정

- 제8조(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제2항의 “5급 이상” 을 “6급 이상” 으로 하고,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시세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500천원이하” 를 “2,000천원이하” 로 개정

○ 신설

-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제1호 승용자동차의 내용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한 세율 적용 산식을 달리하는 즉, 새차와 현차를 차등 과세하는 규정 신설(결국,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12년상한으로 최고 50% 까지 경감하되 2001. 7. 1부터 적용)
- 제40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 에서 “1,000분의 115” 로 하면서 영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2항으로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태훈)

○ 법규적검토

- “농지세” 를 “농업소득세” 로 개정하는 근거는 지방세법 제5조제2항제8호에 의거하며, 이하 제18조(납세의무자), 제4절(농업소득세), 제41조(납세의무자), 제42조(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등 개정사항 등은 법 제197조 내지 제214조의 규정한 바에 따르므로 법규 근거상 하자는 없다 할 것이며

-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제1호 승용자동차의 내용중 신설된 규정과 제40조의3(세율)에서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15로 인상하는 것과 탄력세율로 적용한다는 규정은 법 제196조의5 제1항제1호의2 신설규정이나 법 제196조의 17 근거에 의함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제55조(세율)제1항제1호 가목에서 담배소비 세율을 “510원”으로 인상한 근거는 법 제229조에 의함으로 역시 저촉사항은 없음.
- 위와같은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2000. 11. 17부터 12. 8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던 바, 개정에 따른 이견은 없었고 2000. 12. 16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통과된 사항임으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 행정적 검토

- 제8조(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제2항 및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에서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으로 5급이상에서 실무급인 6급이상으로,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 상한 금액을 2,000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징수에 원활을 기하여야 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의를 받아들여 개정하는 것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 자동차세의 연식에 따른 차등적용으로 줄어드는 8억가량의 세입은 주행세의 세율 인상으로 보전이 가능하다는 견해인 바, 이로 인한 심한 세입 결함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가)질의요지

- 1) 본 개정조례에 의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내년도 세수차이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조병석위원)
- 2) 지금까지 조례개정시 입법예고를 어떤 방법으로 해 왔는가?
(박연길위원)
- 3) 본 조례개정 내용을 2000. 11. 17 ~ 12.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이 기간 중, 몇 번이나 시보에 게재하였는가?
(박연길위원)
- 4) 조례의 개정내용을 제천시민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입법예고하는 방법을 구상해 본 것이 있는가? (박연길위원)

나)답변요지 (세정과장 지선대)

- 1) 새차, 헌차 차등과세로 8억이 줄고, 주행세율이 상향조정됨으로 8억이 보충되어 주행세나 자동차세는 이상이 없으며 담배 소비세율에서 약 3~4억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시보에 게재하고 있다.
- 3) 1번 게재했다.
- 4) 지금까지는 이용을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개설해 놓은 지방세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하겠다.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심사보고 붙임서류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